

의학전문대학원 내규

시행 : 2018.03.01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제2조(대학원의 종류)에 의거 설치하는 의학전문대학원(이하 "본 대학원"이라 한다)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내규는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복합학위과정에 적용한다.

제3조(운영방침) 본 대학원은 의학에 대한 기본적 연구와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및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의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운영한다.

제4조(과정 및 영문표기) 본 대학원의 명칭 및 학위과정의 영문표기는 다음과 같다.

1.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: Kyung Hee University. School of Medicine (KHUSM)
2. 석사학위과정 졸업학위 : 의무석사(Medical Doctor, M.D.)
3. 복합학위과정 졸업학위 : 의과학박사(Medical Doctor & Doctor of Philosophy, M.D./Ph.D.)

제2장 교육목표

제5조(교육목적) 본 대학원은 의학발전 및 인류건강의 증진을 위해 헌신한다. 이를 위해 학생들을 최상의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의사와 의과학자로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한다. 또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여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, 의학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인류에게 봉사한다.

제6조(교육방침) 본 대학원의 교육방침은 다음과 같다

1. 최고지향과 열정 :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한다.
2. 상호존중과 협력 :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협력한다.
3. 인간존중과 협력 : 인간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고 환자의 입장을 배려한다.
4. 원칙준수와 책임 : 원칙을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.
5. 전통존중과 도전 :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며 구성원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도전한다.

제7조(교육목표) 본 대학원은 다음과 같은 의료인을 양성한다.

1.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의료인 : 새로운 의학 지식과 기술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한다.
2. 창의적 연구능력을 갖춘 의료인 : 창의적인 연구로 의학발전에 기여한다.
3.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는 의료인 :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.
4. 리더십을 발휘하는 의료인 : 구성원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발전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한다.
5. 동료와 협력하는 의료인 : 동료들과 협력하여 상승효과를 창출한다.
6. 사회에 봉사하는 의료인 : 지역사회, 국가,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.
7. 인간미 있는 의료인 : 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배려하며 정성을 다한다.

제3장 입학

제8조(전형종류)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.

②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9조(전형시기) 본 대학원의 신입학 전형시기는 수시모집 전형, 정시모집 전형으로 구분한다.

제10조(지원자격)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1. 국내·외 4년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
2. 법령에 의해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연도 의학교육입문검사시험(MEET)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이어야 한다.

제11조(지원절차) 본 대학원에 입학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입학사정) 입학사정은 본 대학원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며, 입학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4장 학위의 구분 및 종류

제13조(분류) ① 본 대학원은 전문학위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② 본 대학원은 학문의 발전추세에 따라 신학문 분야 학위와 2개 이상 학위가 결합된 복합학위(Combined Degree : "예" 의과학박사 M.D./Ph.D.)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14조(학위의 표기방법) ① 전문학위는 의무석사(Medical Doctor, M.D.)로 표기한다.

② 복합학위는 의과학박사 (Medical Doctor & Doctor of Philosophy, M.D./Ph.D.)로 표기한다.

제5장 조직 및 직제

제15조(구성) ① 본 대학원에는 행정실, 의학교육실, 임상실습수기센터를 둔다.

②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, 교무 부대학원장, 연구 부대학원장, 행정실장, 기획 및 대외협력실장, 입학관리 실장, 학생지원실장, 의학교육실장, 학생임상교육실장, 임상실습수기센터장을 두며, 업무처리를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③ 본 대학원에는 각 전공교실을 두고, 각 교실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④ 각 교실별 주임교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교실 주임교수 운영지침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6조(위원회) 본 대학원의 학사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6장 부설기관

제17조(부설기관의 종류) 본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을 둔다.

1.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
2. 경희대학교 고황의학연구소
3. 경희대학교 의과학연구소

제18조(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) 본 대학원 부속병원에 대한 직제는 부속병원 규정에 따른다.

제7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

제19조(학생의 의무)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본 대학원 대학원장, 교무 부대학원장, 학생지원실장 및 멘토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20조(징계) ① 학생이 학칙 및 본 대학원 내규를 비롯한 교내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.

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,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.

③ 학생의 징계는 학생지도 및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. 학생지도 및 장학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21조(장학금 지급기준)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1.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

2. 수혜요건이 정해진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

3.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② 장학생 선정은 학기 단위로 하며,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 단,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,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22조(장학금의 종류 등) 장학금의 종류,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23조(장학금의 지급방법) 장학금은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장학금 지급금액을 감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4조(장학생 선발절차) 장학생은 학년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선발한다.

제8장 수업 및 등록

제25조(수업연한)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(8학기)을 원칙으로 한다. 복합학위과정은 의무석사학위과정 4년(8학기)과 학술박사학위과정 3년(6학기)의 총 7년(14학기)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각 학기는 16주 이상으로 한다.

제26조(교육과정) ① 석사학위 교육과정은 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, 복합학위 교육과정은 복합학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.

② 석사학위과정의 졸업 필요 최소학점은 160학점으로 하고, 학기당 최대 25학점까지 취득까지 복합학위 과정에서 학술박사학위과정의 졸업학점은 복합학위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27조(출석일수 및 학업평가)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전체 수업일의 2/3이상으로 하며, 성적등급은 D-(0.7)이상으로 하고,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의 평균성적은 C(2.0) 이상으로 한다.

② P등급의 학점은 평점평균 계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.

제28조(수강신청) 학생은 매 학기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소정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29조(등록금 납부)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
제30조(계절학기) 계절학기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31조(추가등록) 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학생은 등록 연기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제32조(학업평가) ① 학생이 시험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추가시험원을 제출하고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단, 추가시험의 성적은 89점 이하로 부여한다.

② 학업성취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.

등급	점수		환산점수
	평점	점수	
A+	4.3	97~100	100
A	4.0	94~96	96
A-	3.7	90~93	93
B+	3.3	87~89	89
B	3.0	84~86	86
B-	2.7	80~83	83
C+	2.3	77~79	79
C	2.0	74~76	76
C-	1.7	70~73	73
D+	1.3	67~69	69
D	1.0	64~66	66
D-	0.7	57~63	63
F	0	0~56	0
P(급계)			
N(낙제)			

제33조(성적경고 및 유급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성적경고를 할 수 있으며, 성적 경고를 받은 자는 유급된다.

1.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공필수과목의 성적이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인 자
2. 학년 평균 평점이 2.0에 미달한 자

② 성적경고로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의 모든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하며, 재수강 성적 인정 시 당초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.

제34조(강의계획서) 매 학기 개설한 과목의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학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제35조(강의평가)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 담당교원은 매 학기말 정해진 기간에 학생들로부터 강의평가를 받는다.

제9장 등록금 분할납부

제36조(등록금의 분할납부) ① 재학생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(이하 "분할납부"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분할납부는 해당 학기 등록금 총액을 3회까지 분할하여 본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37조(분할납부 대상) ① 분할납부는 제2기부터 제7기의 재학생에 한하여 허용한다.

② 복학하는 학생 및 당해학기 50% 이상의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.

제38조(분할납부 절차)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9조(분할납부 학생의 신분 등) ① 본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분할 납부한 학생은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갖는다.

② 본 대학원은 분할납부 할 학생이 정해진 기일 내에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, 해당 학생을 제적한다.

③ 분할납부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0장 학적변동

제40조(휴학의 종류) 휴학은 일반휴학, 특별휴학으로 구분한다.

제41조(휴학)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석사학위과정 동안 휴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있다.

③ 휴학기간이 만료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.

④ 복합학위과정의 학술박사학위과정 동안 휴학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하며, 1회에 1년(2학기)를 초과할 수 없다. 휴학기간을 연장할 경우 휴학원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, 총 휴학기간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휴학을 신청하는 경우, 본조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1.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 (병역의무 이행기간까지 가능)
2. 출산으로 인한 휴학 (최대 2학기)
3. 기타 본 대학원장이 정하는 사유

제42조(복학) ①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한다.

② 복학생은 복학하는 해당 학기 또는 학년의 모든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본 대학원에 복학원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복학이 완료된다.

제43조(자퇴) 자진 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4조(제적)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 할 수 있다.

1.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
2. 소정기간 내 등록하지 아니한 자
3.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제적 의결된 자
4. 타교에 입학한 자
5.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
6.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판정된 자

제11장 학위수여

제45조(졸업요건) ① 본 대학원 교과과정이 정한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시험에 통과한 학생에게는 의무석사 학위를 수여하며, M.D./Ph.D. 복합학위과정 학생에게는 의과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.
② 학위기의 양식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제12장 M.D./Ph.D. 복합학위과정

제46조(선발인원) M.D./Ph.D. 복합학위과정 학생은 매 학년별 정원의 5% 내외에서 선발한다.

제47조(선발 기준 및 절차) M.D./Ph.D. 복합학위과정 학생의 선발 기준과 절차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48조(지원자격) M.D./Ph.D. 복합학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적 연구 의욕이 높고 미래의 의과학 분야를 선도할 의지가 투철하여 본 대학원과 국가의 의과학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

제49조(학위과정) ① 1,2학년(1~4학기)의 4학기는 본 대학원 의무석사학위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.
② 3,4,5학년(5~10학기)의 6학기는 학술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술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③ 6,7학년(11~14학기)의 4학기는 의무석사학위과정 3,4학년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.
④ 14학기의 복합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본 대학원 졸업시험에 통과하면 의과학박사학위 (Medical Doctor & Doctor of Philosophy, M.D./Ph.D.)를 수여한다.

제50조(지원) M.D./Ph.D. 복합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51조(학술박사학위 교육과정) 학술박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과 학위논문제출 등에 관한 복합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52조(자격의 유지) ① 의무석사학위과정 동안은 매 학년 평균 평점 80점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학술박사학위 과정 동안은 매 학기 평균 평점 90점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우수한 의과학자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합학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다.

제13장 보칙

제53조(개정절차) 본 내규의 개정은 학사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① 본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본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29조(계절학기)는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07학년도 7월부터 적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본 내규는 200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부칙 제2조는 2017년 9월 1일 이전 입학하여 재학중인 자에게도 적용된다.

제2조(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 유급 및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1년 2월 이후(2021년 2월 포함) 졸업하는 자는 의과대학 의학과 동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.

부 칙

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